

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2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(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)에 따르되,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고, 지정취소(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인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1호	지정취소			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2개월	지정취소	
다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2개월	지정취소	

라.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4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지정취소
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